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제726호
----------	-------

2017. 11. 29.(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나.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

- 제출일자 : 2017년 10월 31일
- 회부일자 : 2017년 11월 01일

다. 상정일자 : 2017년 11월 23일

- 제36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정성엽 보건복지국장)

가.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지원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2항 및 제41조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으로 운영 중인 사무로
- 위탁기간 종료('17.12.31.) 시점이 도래됨에 따라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대상 :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사무
- 위탁기간 : 위·수탁 협약일로부터 3년('18.01.01.~'20.12.31.)
- 선정기준 : 발달장애인 관련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 ※ (현) 수탁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16.07.19~'17.12.31)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예산액 : 488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연도별 변동 가능
- 주요사무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발달장애 조기 발견과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지원

3. 검토보고 요지

(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한철우)

가. 민간위탁 개요

- 2015.11.21.부터 시행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 33조제2항에 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하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본 동의안은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부칙 제2조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

나. 민간위탁 필요성

- 발달장애인은 성인이 되어서도 세수, 화장실 사용 등의 간단한 일상생활 조차도 타인의 도움 없이 영위하기가 어려워 일생 돌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임.

- 또한, 인지력·의사소통 능력 등이 부족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스스로 보호하는 것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학대·성폭력 등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2015.11.21.부터 시행됨.
- 현재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서비스와 인프라는 그 필요량에 비해 지원 규모가 부족하여 발달장애인을 돌보고 있는 부모나 보호자들의 신체적·정신적·경제적·정서적인 부담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들의 특수한 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은 실정이라 할 것임.

다. 종합의견

-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의 주요사무를 보면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 지원계획의 수립,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지원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기능을 고려한다면, 사무의 역할수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특수성에 맞춘 전문성이 요구되는 바, 사무의 특성상 전문성을 갖고 체계적인 관리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이해, 다양한 현장경험이 풍부한 인력을 갖춘 우수한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 2017년 현재 전국 17개 광역시·도 민간위탁 실시(위탁기관:한국장애인개발원)
- 다만, 수탁자 선정에 있어서 장애인들에 대한 연속성 있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 등의 심사평가를 철저히 하여 선정되어야 할 것이며,
- 민간위탁의 순기능적 효과가 발휘될 수 있도록 수시 지도·감독 및 매년 종합감사 등의 사후 관리가 필요할 것이고,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도 수탁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여 명품 발달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임.

관련규정 발췌

□ 장애인복지법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① (생략)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③ ~ ⑦ (생략)

제41조(위임·위탁) ① (생략)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④ (생략)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 동의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민간 위탁하는 사무는 별표와 같다.

제10조(지휘·감독 등)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에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의 대표자나 수탁자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수탁기관의 직무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하면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시킬 수 있다. 다만,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보조금을 횡령하는 등 재산을 유용하는 행위가 발생한 경우
3. 관계법령,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수탁사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경우

4. 도지사의 정당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수탁기관이 파산, 법인정리 절차 개시 신청 등의 사유로 위탁사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6.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처리상황의 감사) ① 도지사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고, 관계임원 및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부칙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2015.3.27.) 종전의 규정에 따른 민간위탁 사무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며, 위탁기간 만료시점에 이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의 주관 실·과·소장이 된다.

제8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재계약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계약하고자 할 때에도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부.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 번호	726
----------	-----

제출연월일 : 2017년 10월 31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이유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1조 및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의거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17.12.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협약을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 대상 :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 계획

- 수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수탁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권고기관)
 - ※ 발달장애 관련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 수탁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사업비 : 488백만원(국비50%, 도비50%) *연도별 변동 가능
- 위탁주요사무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3. 참고사항

- 민간위탁 추진 기본계획 및 관계 법령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 계획



보건복지국
노인장애인과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위탁기간 만료('17.12.31.)

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발달장애인의 욕구에 적합한 체계적인 지원 및 권익옹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자 함

- 민간위탁(3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 -

I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41조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8조(위탁기간)

II 위탁개요

- 위 치 : 충북 청주시 흥덕구 공단로 134 세종테크노밸리 1층
- 위탁범위 :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전반
- 위탁기간 : 2018. 1. 1. ~ 2020. 12. 31.(3년)
- 수탁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보건복지부 권고기관)
 - ※ 발달장애 관련 전문성과 사업경험이 풍부한 공공기관
- 위탁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사 업 비 : 488백만원(국비50%, 도비50%) *연도별 변동 가능
- 위탁사무
 - 발달장애인에 대한 개인별지원계획의 수립

- 발달장애인을 위한 복지지원 정보의 제공 및 연계
- 발달장애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발달장애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정보의 축적 및 관리
-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홍보 등

Ⅲ 추진체계 및 절차

①추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계획 수립 	'17. 10월
②의회동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간위탁 의회동의(11월 회기중) * 동의안 '붙임' 참조 	'17. 11월
③수탁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자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에 따른 공공 기관 	'17. 11월
④수탁심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성 : 6~9명 정도 - 심사 : 전문성, 사업실적, 사업계획 등 - 결정 : 공개모집(고득점자 선정) 재계약(사업실적, 운영효율성 등 고려) 	'17. 11월
⑤협약공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약체결 및 공증 	'17. 12월
⑥사무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수탁 사무개시 	'18. 1. 1.

IV 세부 추진계획

① 수탁기관 선정

- 선정방법 :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위탁기간 동안 사업실적, 운영성과 등 고려 수탁기관선정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 위탁조건
 - 사업의 범위는 「충청북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 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고 협약내용 성실히 수행
 - 위탁시설의 용도를 임의 변경 사용 금지
 - 위수탁 협약서 공증은 협약체결 후 즉시 수탁기관이 공증하여 제출 등

②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심의대상 : 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개최시기 : '17. 11월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준용
 - 구성인원 : 6~9명 이내(관계 공무원 및 해당분야 전문가)
 - ※ 당연직 3(기획관리실장, 행정국장, 보건복지국장), 기타(전문가) 위촉
 - 심사항목 : 사업실적, 사업수행능력, 사업계획 및 예산책정 등
- 계획설명 : 신청기관 사업계획 설명(공개모집 또는 재계약)
- 수탁자 선정 : 사업실적, 운영성과 등 고려 선정

③ 협약체결 및 공증

- 체결시기 : '17. 12월
- 내 용 : 협약 체결 및 협약 내용 공증

V 향후계획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 '17. 11월
-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의 : '17. 11월
- 협약 체결 및 공증 : '17. 12월
- 위·수탁사무 개시 : '18. 1. 1.

관계 법령 발췌

□ 장애인복지법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성 장애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정책을 장애인과 그 보호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하며, 국민이 장애인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하는 데에 필요한 정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발달장애인지원센터) ② 시·도지사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호 활동,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한 상담 등을 담당하는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필요성을 고려하여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시·군·구에 설치할 수 있다.

제41조(위임·위탁)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지정하여 제25조제2항에 따른 직업재활시설이나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는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8조에 따른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 또는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위탁 대상사무의 기준등) ① 도지사는 법령 및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사무

② 도지사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를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무 중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를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계약 시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한다.

제5조(수탁기관의 선정)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사무의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① 수탁기관 선정에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탁사무별로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위촉 시에는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심의가 끝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

④ 위원장·부위원장 및 위원은 충청북도(이하 “도”라 한다) 소속 공무원과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위원 수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사업계획서의 심의 및 현장확인과 신청인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충청북도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조(협약체결등)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위·수탁 사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내용은 반드시 공증을 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도지사는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했을 때에는 사무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시행규칙

제3조(수탁기관 선정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충청북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탁사무 해당부서(이하 “소관부서”라 한다)에서 구성·운영한다.

② 조례 제5조제2항의 공개모집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4조(자격제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의 범위안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제5조(협약의 체결 등) ①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의 체결, 협약내용의 공증 등 일체의 사무를 처리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을 체결하고 협약내용에 대한 공증을 마친 때에는 위·수탁협약서의 사본을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소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수탁협약서를 접수한 자치행정과장은 위탁사무의 현황을 파악하고 정리하여야 한다.

④ 소관부서의 장은 위·수탁협약서의 원본을 영구문서로 분류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⑤ 위·수탁협약서에는 위·수탁기간, 예산지원과 정산, 수입금의 처리, 협약의 해지, 대상 사무의 시설 및 장비내역, 민·형사상의 책임과 손해배상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하며, 협약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제6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 ① 조례 제6조제2항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③ 위원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④ 당연직 위원은 행정국장, 업무주관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위탁사무와 관련있는 분야의 관계전문가를 도지사가 위촉한다.

□ '16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계획(보건복지부 지침)

○ 지역센터 위탁(p2)

- 설치주체 : 광역지자체장
- 설치기준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상 공공기관에 위탁
- 수탁 권고기관 : 한국장애인개발원

광주/대구 모의적용사업을 위탁 수행하여 지역센터 기능, 운영 전반에 이해도가 높으며, 중앙센터 운영주체로서 지역센터 총괄업무 수행에 상대적으로 적합도가 높다고 판단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주요사업(p3)

- 정보과약 : 발달장애인 특성·지리적 분포, 발달장애인 대상 서비스 제공기관, 공공후견인 등 관련 현황 정보를 수집하여 중앙센터에 보고
- 평가 : 관할 지역내 전담 경찰 지정(법 제13조), 평생교육기관 지정(법 제26조), 문화·예술 지원시책 수립(법 제27조) 여부 등 점검·평가
- 지원 : 발달장애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원 담당 직원, 전담 검사·경찰 교육, 공공 후견인 선임·감독 등 관계 기관, 기초지자체 지원